

제 호

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(변경)신고확인증

- 성 명
- 생년월일
(외국인 등록번호/법인·사업자등록번호)
- 주 소
- 설치목적
- 통신방식
- 설비의 설치장소
- 설비의 개요
 - 선로설비
 - 기기설비
 - 기타설비

전기통신사업법 제64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6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(변경)신고를 필하였습니다.

년 월 일

○○시·도지사
○○전파관리소장

직인

준 수 사 항

- ① 설비의 설치공사 완료후 7일 이내에 자가전기통신설비확인신청서를 관할 전파관리소장 또는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- ②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는 그 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설치한 목적에 반하여 이를 운용할 수 없으며, 전기통신사업법 제65조(목적외 사용의 제한) 제1항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는 사용정지 명령, 시정명령, 과징금 부과, 벌칙 등이 적용됨을 강조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관련법령>

- 전기통신사업법 제65조(목적외 사용의 제한)
- 전기통신사업법 제67조(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)
- 전기통신사업법 제90조(과징금의 부과 등)
- 전기통신사업법 제98조(벌칙)